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8 선고 2021가단2488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변 론 종 결 2021. 10. 25.

판 결 선 고 2021. 11. 8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는 연대하여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10. 16.부터 2010. 12. 31.까지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2011. 7. 19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들은 연대하여 648,560,000원 및 그 중 202,180,000원에 대하여 2007. 12. 6.부터, 128,480,000원에 대하여 2007. 11. 24.부터, 317,900,000원에 대하여 2007. 12. 29.부터 각 2010. 12. 31.까지 연 19%, 그 다음날부터 2011. 7. 19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가. 피고 주식회사 C, 피고 D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E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진영

별지